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등 제출(안 제1조의5 신설)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주기 명확화(안 제68조제1항제2호·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관리인의 경우 매일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환경부령 제1008호, 2022. 12. 9 공포, 2022. 12.

11. 시행)하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명확화 함
다. 가중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
표5의3 제1호다목, 별표5의4 제1호다목, 별표10 제1호다목, 별표15 제
1호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매일”을 “매일(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시설 관리업자”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한다.

별표 5의3 제1호다목, 별표 5의4 제1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 별표 15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u>매일</u>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3. (생 략)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u>처리시설 관리업자</u>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u>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u>매일(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u> ----- ----- ----- ----- 3. (현행과 같음) ② ----- ----- <u>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u>----- -----.